

II. 인적사고의 손해배상 체계 현황

1. 인적사고의 발생현황

사람들이 하루 동안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기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인적사고(personal injury accident)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 중 자신의 잘못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하지만, 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인적사고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 발생빈도(frequency)는 증가하지만 사고의 심도(severity)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인적사고의 1일 평균 발생 추이

(단위: 건,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CAGR
사고 수	704.9	704.1	745.5	759.7	800.8	768.8	747.3	1.8
사망자수	22.7	21.9	21.5	20.3	19.9	18.5	21.6	-4.0
부상자수	956.3	957.7	941.9	954.6	1,012.5	985.9	952.6	0.6

자료: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 연도.

먼저 사고발생빈도를 1일 평균사고건수로 보면 747.3건이 발생하며 매년 1.8%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적사고의 심도는 1일 평균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로 나누어 볼 경우 1일 평균 21.6명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고, 952.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사고심도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보면 사망자 수는 매년 4.0%씩 감소하고 있지만 부상자 수는 0.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하고 개인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인적사고의 발생원인별 분포를 보면 자동차 등의 도로교통상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화재, 수난, 추락, 해양, 폭발 등의 순서로 발생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의 79%인 6,019명이 도로교통사고로, 426명이 화재로, 24명이 붕괴로 사망하고 있다. 또한 매년 35만 3,371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97%가 도로교통사고에 기인하고 있다.

〈표 II-2〉 인적사고 원인별 사망, 부상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5	2007	2009	2010	평균	CAGR	
사망 사고	합 계	8,294	7,849	7,257	6,758	7,597	-4.0
	화재	505	424	409	304	426	-9.7
	산 불	10	9	5	2	6	-27.5
	붕 괴	27	29	29	19	24	-6.8
	폭 발	12	9	6	1	7	-39.2
	도로교통	6,376	6,166	5,870	5,505	6,019	-2.9
	해 난	52	70	97	85	68	10.3
	기 타*	1,312	1,142	841	841	1,047	-8.5
부상 사고	합 계	349,038	343,808	369,578	359,840	353,371	0.6
	화재	1,837	2,035	2,032	1,588	1,912	-2.9
	붕 괴	75	81	114	143	85	13.8
	폭 발	92	157	67	64	109	-7.0
	도로교통	342,233	335,906	338,962	352,458	341,458	0.6
	해 난	168	0	0	68	48	-16.5
	기 타*	4,633	5,609	28,399	5,519	9,752	3.6

주: 기타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고원인이 포함된 것이며, 2010년 사망의 경우 철도 135명, 수난 360명, 추락 104명, 등산 88명, 농기계 60명, 전기 47명, 가스 10명, 공단 내 시설 및 승강기 각각 10명, 광산 7명, 자전거 6명, 레저 3명, 유도선 및 항공기 각각 1명임.

자료: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 연도.

2. 인적사고의 손해배상 체계

가. 손해배상의 범위

인적사고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고를 야기한 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손실보상책임¹⁾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적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근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원이 상실되고,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인적사고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 자신의 귀책사유인 것은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지만,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리스크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전적으로 제3자의 손해배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 등에 기인한 손해의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법 제750조이다. 동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1조와 제752조에서 인적사고의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63조에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1) 손해배상(damages)과 손실보상(loss compensation)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은 재산권 등 권리의 침해나 신체상해로 인한 과거, 현재, 미래의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하며 민법상의 관련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체(harm, injury, loss)와는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에 침범했다면 원고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었지만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개별 적법행위를 규정하는 법규가 별도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에 해당된다.

한다.2)”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위법”이 인정되면 “통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의 손해배상금은 경제적 손해(pecuniary or economic damages)와 비경제적 손해(non economic damages)로 구분한다.3) 경제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재산손해와 소극적 재산손해로 분류되는데 적극적 재산손해에는 치료비, 장례관련비와 기타비용이 포함되며, 소극적 재산손해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으로 구성된다.

〈표 II-3〉 인적사고 손해배상금의 구성

중구분	세부구분	해당비용	사고 구분		
			부상	후유장해	사망
경제적 손해 (재산 손해)	적극적 재산손해	치료관련비	○	○	-
		장례관련비	-	-	○
		기타비용	○	○	○
	소극적 재산손해	휴업손해	○	-	-
		상실수익	-	○	○
비경제적 손해 (정신적 손해)	위자료		○	○	○

- 2) 민법 제760조는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를 준용하고 있다.
- 3) 외국사법제도연구반(2007),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상액 산정」, 법원행정처, p. 34 참조. 국내의 손해배상은 미국의 전보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된다.

미국의 손해배상 범위

손해구분	불법행위	손해발생	비고
전보적 손해배상 (compensable damage)	과실	발생	경제적 손해, 비경제적 손해
명목적 손해배상 (nominal damage)	과실	미발생	-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	고의, 중과실	발생	-

여기서 사망자의 상실수익이란 사망자가 생존하였다면 장래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말한다. 상실수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통상 사망자의 월(또는 년) 순수입으로부터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고 추정취업가능월수(또는 년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나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후유장해에 의한 상실수익은 사고로 부상한 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사고 전 노동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말한다.

사망 상실수익과 후유장해 상실수익의 계산방법은 비슷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생활비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노동능력상실률(disability)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점 등이 사망의 경우와 다르다. 호프만식은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는 라이프니쯔식에 비하여 중간이자공제액이 적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은 라이프니쯔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서는 호프만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법원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호프만식을 사용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금의 지급방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민법상의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하고, 특수한 불법행위의 경우는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재해, 자동차사고 등을 들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금을 정기금채무(periodic payment)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기금배상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정기금형식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음

은 물론이다(민법 제725조, 종신정기금 계약).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판결에서는 일시금지급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이다.⁴⁾

판례 중에는 상실수익의 경우 정기금과 일시금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일시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으로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판결이 있다. 그러나 간병비,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일시금지급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배상으로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대법원 판결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기금과 일시금이 논란이 되는 재판은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및 여명예측이 불명확한 경우 상실수익의 생활비 공제에 관한 분쟁이다. 이때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가 일시금지급을 원할 때 정기금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위자료나 확정할 수 있는 일실손해 항목은 민법상의 근거조항에도 불구하고 실무 관행은 일시금지급으로 굳어져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7267B 판결은 “전문 감정인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며, (중략) 특히, 이와 같이 혼용하여 일실손해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의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4) 최은순(2008), 「신체사고에서의 정기금배상」, 『외법논집』 제31집, p. 461.

다. 손해배상대책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리스크는 일반 재물손해리스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피보험이익 측면에서 보면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를 위한 것(the third party risk)임에 비해 재물손해리스크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손해액의 확정 측면에서 보면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의 수나 배상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고 사고시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재산손해는 사고 전에도 최대로 발생 가능한 손해규모를 예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 등을 신속하게 배상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나 손실보상책임에 대해 보상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를 적용하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 등이 있고 기타의 일반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자동차사고, 화재사고, 가정용LPG사고 등의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적용함과 동시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책임도 과실책임을 적용하지만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보상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법리를 적용하면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 있다.

〈표 II-4〉 인적사고의 보상대책 구분

구분	손해배상책임			손실보상책임
	일반불법	특수불법	국가배상	
적용법규	민법	개별법규	국가배상법	개별법
적용법리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손해대책	없음/의무	의무	없음	의무
예시제도	수련시설	자동차, 화재, LPG(가정용)	-	근재, 산업재해

인적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사고와 화재사고, 가스사고의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불법행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불법행위는 피해자 1인당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보상한도를 규정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과실책임에 의해 받아야 한다. 국내 인적사고의 80% 이상인 자동차사고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사망 시 1억 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 부상을 당한 경우 최고 2,500만 원을 의무보험제도를 통해 보상받게 된다.

〈표 II-5〉 특수불법행위 인적사고의 보험제도 운영현황

구분	근거법률	가입자	보장내용	배상액	시행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운행으 로 인한 타인의 신체 손해	사망·후유 장해 1억, 부상 2,500만	'63.4.4
신체 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5	특수 건물 소유자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손해	사망·후유 장해 0.8억, 부상 1,500만	'73.2.6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43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25 규칙§53②,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33	가스사 업자 및 특정가 스시설 사용자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사망·후유 장해 0.8억, 부상 1,500만	'84.7.1

3. 산재사고의 보상제도

가. 손실보상범위

19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보험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만 적용하다 점진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제공한다.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기타 급여를 지급한다. 요양급여(medical benefit)는 피재근로자의 요양이 4일⁵⁾ 이상인 경우에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의 지출된 요양비 전액을 현물로 지급한다. 즉, 요양급여는 치료를 위해 요양하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보상받게 되며 치료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公私)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자기부담금(coinsurance, deductible)제도는 없다. 2010년 현재 요양급여환자는 40,259명(입원 12,340명, 통원 27,829명)이며 요양급여액은 7,665억 원에 이른다.

휴업급여(disability income benefit)는 피재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 1일당 평균임금⁶⁾의 70%를 보상해주고 있다. 2010년도의 휴업급여 수급자는 121,836명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급여액은 7,531억 원이다. 그리고 피재근로자가 요양을 받았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력상실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14개의 장애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에 대한 소정의 금액을 장애보상금(disability benefit)으로 지급한다. 장애보상급여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을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의 경우 장애등급 제14급은 평균임금의 55일을 지급하고 제1급은 평균임금의 1,474일을 지급한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 제7급은 평균임금의 138일분, 제1급은 329일분을 지급한다. 2010년 현재 장애보상금은 1조 3,97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8% 증가했으며 이중에서 일시금은 5,535억 원이고 나머지가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5)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되는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고,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치료기간이 3일 이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p. 93.

6)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된 개념으로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진폐보상연금은 장해급여의 일환으로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급연금액은 진폐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⁷⁾ 또한 피재근로자가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1일당 정액(상시간병 38,240원, 수시간병 24,490원)을 간병비(medicare benefit)로 지급한다.

피재근로자가 피재 이후 2년 동안 요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아 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상태가 폐질등급 제1급에서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보상연금(medical compensation annuity)을 지급한다. 2010년 현재 6,451명의 수급자가 있고 연금 지급액은 1,829억 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요양근로자에 대해 직업재활급여, 장해유족특별급여(장해 1-3급인 경우 지급 1,000일분)를 지급한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피재근로자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한다. 2010년의 유족급여는 18,130명에 대해 3,521억 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장제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해주는 급부이다. 따라서 유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유족이 직접 장제를 행한 경우에는 피재근로자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자 간 임금수준의 차이로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고와 최저금액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며 2010년 지급금액은 225억 원이다.

7) 1급, 3급은 평균임금의 132일분, 5급, 7급은 72일분, 9급, 11급, 13급은 24일분을 지급한다.

〈표 II-6〉 산재보험의 대표적인 급여범위

구분	급여 종류	산재보험	근재보험
부상 질병	요양급여	요양비(치료비) 전액	좌동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폐질등급 1급~3급 해당자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
	일시 보상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해도 완치 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
	휴업급여	1일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1급~14급: 평균임금의 1,474 일분~55일분 단, 1급~7급: 연금지급 가능	1급-14급: 평균임금의 1,340 일분-50일분 연금지급 없음
	간병급여	치유 후 1,2급 후유장애 -상시간병: 1일 38,240원 -수시간병: 1일 25,490원	-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금지급가능	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평균임금의 90일분

주: 진폐, 특별급여는 제외되었음. 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업무상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포기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자료: 고용노동부(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근재보험약관.

나. 손실보상방법

산재보험은 보상금의 종류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의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보상금 중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만 가능하고 기타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 각 급부별로 연금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⁸⁾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한다. 다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연금수급권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금수급권자 중 생계대책 등에 의해 연금의 일부를 선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다.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급여기초연금액(평균임금의 365일)의 47%에 대하여 연금수급자격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즉, 연금수급권자가 1인인 경우에는 급여기초연금액의 47%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수급권자를 1인 추가할 때마다 가산금액과 급여기초연금액을 5%p씩 증가시켜 연금액을 계산하고 수급자는 최대 4인으로 제한한다.

산재보험에서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보면 2000년까지는 10%를 넘지 않았으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후소득확보 필요성 증가 등 사회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현재로 산재보험 전체급여액 3조 5,237억 원 중에서 30.9%인 1조 882억 원이 연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3.2%p 증가한 규모이다.

〈표 II-7〉 총 급여 중 연금급여 비중의 증가 추이

(단위: 억 원,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총 급여	5,394	11,336	14,563	30,258	32,423	34,219	34,631	35,237	
장해 급여	일시금	1,174	2,542	2,237	5,058	5,033	5,433	5,429	5,535
	연금	90	415	1,367	4,164	6,674	7,226	7,482	8,443
유족 급여	일시금	692	1,596	1,531	1,163	1,194	1,245	1,141	1,082
	연금	3	13	62	1,043	1,774	1,932	2,185	2,439
연금 비중	1.7	3.8	9.8	17.2	26.1	26.8	27.9	30.9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8) 고용노동부(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pp. 93~115에서 정리하였다.

4. 자동차 등 사고 보상제도

가. 자동차사고

1) 보상손해의 범위

국내 인적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자동차사고가 차지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는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와 운전자 자신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가 리스크관리 대책으로 도입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제도이다. 즉, 자배법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불특정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자배법 제3조 및 제5조). 임의보험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피해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여 관련된 리스크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사고의 경우 운전자 자신과 가족의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제3자의 인적사고 즉 손해배상책임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불특정 제3자가 소득보전대책을 위한 보험가입 등의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동차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알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인적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사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손해배상이다. 이 경우 피해자가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2,500만 원의 부상보험금을 지급하며 사망 시 최고 1억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부상을 치료한 뒤에 휴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휴유장해등급에 따라 최고 1억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는 사망, 부상, 휴유장해별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망의 경우는 “장래

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구조수색비”로 구성되어 있고, 부상의 경우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구조수색비”, “기타손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유장해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개호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보험금지급항목 이외에도 비용이 있는데 주로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등과 같은 것으로, 실제 손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망자 본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는 사망자의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총 4,500만 원, 그 외의 연령인 경우 총 4,000만 원이다. 후유장해의 경우 사망자 본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후유장해에서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여 사망 시 위자료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예를 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50%인 경우이면서 장해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4,500만 원의 기본 위자료에 장해율 및 7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상의 경우 적극손해항목인 “구조수색비”는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가 지급되고, “치료관계비”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개호는 치료 후에도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하는 것도 자기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피해자의 경우 이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 장래에 필요한 간병인을 특별히 개호인이라 부르며 그 업무내용을 개호라 한다. 개호비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을 앞서 설명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준다.

〈표 II-8〉 대인배상 보장내용 및 지급기준

보장내용		지급기준	
사 망	장례비	300만 원	
	위자료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 20세 이상 60세 미만: 4,500만 원 (2) 사망자 연령 20세 미만 60세 이상: 4,000만 원	
	상실 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즈계수	
부 상	적극손해	가. 구조비: 실비 나. 치료관계비: 입원비, 응급치료, 치아보철비 등 비용	
	위자료	등급별로 200만 원(1급) ~ 15만 원(14급)	
	휴업손해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	
	기타손해 배상금	적극손해, 위자료 및 휴업손해 이외의 손해배상금액(입원: 1 일 13,110원, 통원: 1일 8,000원)	
후유장해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자 연령을 감안하여 지급	
	상실 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기간 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즈계수	
	개호비	1일 1인으로 한하여 일용노동자 임금(일시금 또는 퇴원일 부터 향후 생존기간까지 매월 정기금)	
비 용	대인배상 I	손해방지 · 경감비용, 권리보전 행사비용	
	대인배상 II	손해방지 · 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합의 · 절충비용, 소송 · 화해 · 중재비용 등	

주: 본 내용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있는 것을 요약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람.

둘째, 뺑소니차 및 무보험자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동 사업의 재원은 자동차책임보험료의 5% 이내를 소유자로부터 각출하는데 2009년의 경우 최대 1,618억 원이 된다(자배법 시행령 제31조). 동 사업은 자동차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자배법 제5장). 또한 동 보장사업과 더불어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자의 유자녀나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자배법 제30조).

〈표 II-9〉 보장사업 각출비 최대금액

(단위: 억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인배상 I 보험료	28,521	29,506	31,856	65,112	33,781	32,356
보장비용	1,426	1,475	1,593	3,256	1,689	1,618

2) 손해배상금의 지급방식

가) 대인배상보험금

자동차사고의 인적보험금에 대한 지급방식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험약관에는 규정되어 있다. 먼저 자배법상의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인배상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제724조)과 자배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II-10〉 자동차 인적사고의 지급방식

구분	담보별	손해보상 여부		보험금 등 지급방식
		소유자	피해자	
보험 제도	대인배상 I · II	×	○	일시금
	자기신체	○	×	
	무보험차상해	○	×	
보장 사업	대인배상 I	×	○	정기금
	지원사업	○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표준보통약관에서는 일시금과 정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표준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⑦에서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정기금지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보상실무에서는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와 간호비에 대해서는 정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유가족의 생활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상실수익과 위로금에 대해서는 정기금지급이 전무한 실정이다. 2009년도에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전체 자동차사고보험금의 30%인 2조 3,000억 원의 규모인데 전부가 일시금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II-11〉 자동차 대인배상 I 보험금 지급 추이

(단위: 억 원, 만 건, %)

구분	자동차 전체 실적			대인배상			
	보험료	사고 건수	보험금	보험료	사고 건수	보험금	점유비
2004	81,038	331.7	56,086	28,521	72.2	20,381	36.3
2005	83,422	374.4	62,368	29,506	81.4	22,996	36.9
2006	91,698	404.8	67,195	31,856	86.9	24,197	36.0
2007	103,109	432.5	70,840	65,112	92.3	24,573	34.7
2008	104,134	446.4	72,786	33,781	93.1	23,810	32.7
2009	106,815	508.2	79,685	32,356	101.4	23,769	29.8

자료: 보험개발원(2011), 『2010 손해보험통계연보』, p. 288, p. 302.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자동차사고손해보장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교통사고 유자녀(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⁹⁾이다. 동 사업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소득(1인 가구 553,354원)과 건강보험료(직장 1인 가구 16,047원)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로 월 최대 2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중증후유장애자의 경우는 재활보조금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자금대출을 무이자로 월 20만 원 지원해주며 장학금으로 초·중·고 각각 분기당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고, 자립지원금으로 월 4만 5천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피부양노부모에게는 무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표 II-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구분	지원 금액	
중증후유장애자	재활보조금(무상)	월 20만 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0만 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 원
		중학생	분기 20만 원
		고등학생	분기 30만 원
	자립지원금	월 4만 5천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 20만 원	

자료: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safety/accident/support_01.jsp).

9) 피부양노부모는 다음 가, 나)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나. 화재사고 등 보상제도

1) 화재사고

화재로 인한 인적사고의 경우에도 불특정 제3자의 사망과 부상 피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보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화보법 제4조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보법 시행령 제5조(보험금액)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에는 8,000만 원(다만, 실손해액¹⁰)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때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보법 제8조(보험금 지급)에서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기금지급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험가입은 주로 화재보험에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을 첨부를 통해 하는데 동 특약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폭발사고 보상제도

가스폭발, 인화물질폭발 등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인적 피해와 재산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가스폭발사고가 불특정 제3자에게 가장 많은 손

10) 화보법 시행규칙 제2조(실손해액)는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납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을 주기 때문에 관련법규(〈표 II-5〉 참조)에서 손해배상책임자를 규정하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입해야할 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자, 충전자, 사용자, 판매자이며, 손해배상책임부담액은 사망의 경우 8,000만 원(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 부상의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1,500만 원(1급)에서 최저 20만 원(14급)을 지급하며,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최고 8,000만 원(1급), 최저 500만 원(14급)을 지급한다.¹¹⁾ 피해자에게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며, 보험금의 정기금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의무보험을 담보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은 보상하는 손해의 한도액과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약관에서도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기금 지급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보험가입 등).